

시행 규칙 (EU) 2021/1318

(EU) 2017/2470 수정

2008/968/EC에 따라 사용승인 된 신소재 식품인 *Mortierella alpina* 유래 아라키돈 산이 풍부한 오일의 신소재 품목 규정 (EU) 2017/2470의을 수정함.

개정내용

시행 규정(EU) 2017/2470에 대한 부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됨:

제1조

유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 조제식에 *Mortierella alpina*의 곰팡이 오일을 추가하는 것은 지침 2006/141/EC의 부록 I, 5.7 및 부록 II, 4.7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아라키돈산 함량에 따라 제한함.

1) 시행 규정(EU) 2017/2470에 대한 부록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.

(a) 표 1(승인된 신소재 식품)의 '*Mortierella alpina* 곰팡이로부터 얻은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오일' 항목은 다음으로 대체됨:

승인된 신소재 식품	사용조건		추가적인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	기타조 건
	식품 카테고리	최대허용량		
<i>Mortierella alpina</i> 곰팡이로부터 얻은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오일	규정 (EU) No 609/2013에서 정의된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	규정 (EU) No 609/2013 ¹⁾ 에 따름	신소재 식품을 함유한 표시는 ' <i>Mortierella alpina</i> 곰팡이로부터 얻은 오일' 또는 ' <i>Mortierella alpina</i> 오일' 함유	

(b) 표 1(승인된 신규 식품) 및 표 2(조건)의 '*Calanus finmarchicus* oil'¹⁾ 항목과 'Chewing gum base(monomethoxypolyethylene glycol)' 항목 사이에 다음 항목이 삽입됨:

1)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유아 식품 등의 정의와 조성물질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정으로 각 식품 유형에 첨가(강화)할 수 있는 영양소(성분)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, 각 영양소(성분)의 최소, 최대 함량은 각 관련 규정을 따르며 해당 물질의 2006/141/EC의 부록 I, 5.7 및 부록 II, 4.7에 명시된 기준은 총 지방의 1% 미만임.

승인된 신소재 식품	사용조건		추가적인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	기타조건
	식품 카테고리	최대허용량		
칼슘 L-메틸폴레이 트	규정 (EU) No 609/2013에서 정의된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	규정 (EU) No 609/2013 ²⁾ 에 따름	신소재 식품을 함유한 표시는 '칼슘 L-메틸폴레이트' 함유	
	규정 (EU) No 609/2013에서 정의된 곡류조제식품 및 유아식	규정 (EU) No 609/2013에 따름		

시행일: 2021. 8. 29

2)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유아 식품 등의 정의와 조성물질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정으로 각 식품 유형에 첨가(강화)할 수 있는 영양소(성분)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, 각 영양소(성분)의 최소, 최대 함량은 각 관련 규정을 따르며 해당 물질의 기준은 100 KJ 당 최소 2.5~12 (ug) 또는 100 kcal 당 최소 10~50 (ug)임.